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이선우 의원 외 5명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이선우·김낙관·김영길
김재우·안주찬·이지연(6명)

1. 제안이유

구미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라. 소송비 지원 기준 등(안 별표 1, 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의원 임기 만료나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구미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미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구미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 분	내 용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착수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1.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2,000,000원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2 5. 그 밖의 실비	○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8,000,000원		
	2. 상소심 및 환송심	원심의 1/2		
형사 소송		7,000,000원 이내	1. 출장여비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2 2. 그 밖의 실비	○ 신청서 ○ 판결문 ○ 공소장

2.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서 ○ 판결문 ○ 사건 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2 바. 그 밖의 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구미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비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생년월일

(휴대 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번호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죄명

피고인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라. 생략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3조에 따른 예산 지원은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례 발생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구미시의회 의원 이선우